

# 朱子 「家禮」와 그에 나타난 昏禮에 대한 고찰 (I)

- 議昏, 納采, 納幣 -

A study of traditional marriage ceremony as shown in Chu-Ja's 「Ka-ryae」(I)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길표

강사 최배영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

Prof. : Kil Pyo, Lee

Lecturer : Bea Young, Choi

##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II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show the purpose of writing 「Ka-ryae」 and its transmission and operation from the end of Koryo to Chosun dynasty. And Studying of a traditional marriage ceremony as shown in 「Ka-ryae」, We intend to find a mental meaning and value in it.

The major findings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ough 「Ka-ryae」 was written by Chu-Ja who lived in the period of South-Song of China, it had greatly influenced the thought, system and life of Korean society from the end of Koryo to Chosun dynasty.
2. Studying the content of 「Ka-ryae」, we learned the respect, discretion and rightness as the mental meaning and value of a marriage ceremony.

## I. 서론

혼례는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겪게 되는 통과 의례 중 하나인 동시에 그가 속한 사회구조의 일부로서 중요한 생활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일정한 의식절

차인 혼례를 거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가정을 형성하게 됨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의 생활문화를 계승·창조·발전 시켜 나가게 되는 구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부터 혼례는 공경하며 삼가 신중하고 바르게 (「禮記」〈昏義〉, 所以敬慎重正昏禮也) 행해

적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혼례에 내재된 중요한 정신적 의미이자 가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혼례문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부 부정적인 병폐들을 반영하여 혼례가 지닌 본래의 의미는 왜곡되거나 상실된채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가 주도하는 과소비·사치 풍조, 경쟁적 과시문화로 인한 허례허식, 전통도 국적도 없는 부의식적 서구화 추종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이주의 등에 휩싸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저해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와 정부에서는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혼례의 구체적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적 자료 마련을 위한 문헌연구가 병행해서 이루어지 혼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관혼상제례에 관한 문헌들 중 역사적인 母體로 사료되는 주자의 「가례」를 선정하여 그에 나타난 혼례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상 조선시대 관혼상제례의 典據가 되었던 주자가례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일찍이 일제강점기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의 선구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후반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고영진, 1989) 80년대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주자가례는 예학, 국사학, 한문학, 동양철학 등의 분야에서 각기 연구되어왔다. 결국 가정학에서는 관혼상제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관혼상제례의 전거였던 주자가례에 관한 연구는 미진했던 셈이다.

이는 그 동안 古文헌을 집하는데 익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헌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소의 난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유추되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가정학 논문과 대다수가 특히 혼례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단지 1844년에 간행된 李穡의 「사례편람」에만 주로 의거하여 논의를 해왔

던 제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자 「가례」를 토대로 삼아 광의로는 가례의 생활사적 연구에, 협의로는 혼례에 관한 연구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가례의 배경적 특성으로 저술동기와 구성체제 그리고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의 주자가례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것을 생활사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시사하는 현대적 의의를 되새기고

둘째, 주자가례에 나타난 혼례의 내용을 고찰하여 앞으로 계승해야 할 혼례의 올바른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교육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주자가례의 배경적 특성

#### 1) 「가례」의 저술동기

「가례」가 朱子에 의해 저술되었는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대표적인 說로 「가례」서문에서 楊復이 부연한 바를 살펴보면 南宋의 朱子가 마흔살이 되던 1169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 古수를 참상하여 그 변한 부분을 극진히 해서 喪葬祭禮를 만들었으며, 또 冠禮며 昏禮를 궁구하여 그 이름을 「가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분실해 버렸기 때문에 易贊해서 사용하였고, 또 易贊한 것도 분실했다가 그가 沒한 후에 그것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하여 주자가례가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보아 朱子가 생전에 選述한 것을 그가 서거한 다음에야 그의 문인들이 「가례」로 정리하여 편찬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경로로 완성된 주자가례의 저술동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冠·昏·喪·祭의 제도와 출입·기거하는 節文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주자는 時宜에 맞게 가례를 하나로 정리하여 그 당시 사회를 바르게 禮俗化시켜 나가려고 하

는 국민계몽을 지향한 교육적 동기를 지녔다.

그는 이러한 동기에 따라 三禮(의례, 예기, 주례)를 근거로 하고 당시 명문대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私家禮를 모두 참조해서 「가례」를 저술하였는데(박경변, 1994) 그 안에는 인간의 윤리·도덕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다. 즉 「가례」의 서문에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릇 禮에는 根本이 있으며 文이 있는 것이니 그 家에서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말할진대, 名分을 지키는 것과 愛敬을 행함은 근본이고, 冠·昏·喪·祭의 義章과 度數는 文이다. 그 根本은 家에서 날마다 쓰는 常體이니 진실로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그 文 또한 人道의 기강으로 삼는 바이니 그것을 행하는 데는 때가 있고, 그것을 배푸는 데도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강구하여 밝지 못하고 그것을 학습하여 익숙하지 못하면 그 일에 임해서는 마땅한 데 순하도록 節文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니, 하루라도 강구하여 익히지 아니할 수 없다. … 진실로 원컨대 같은 뜻을 가진 선비와 더불어 자세하게 강구하고 힘써 행하면 거의 옛 사람의 修身·齊家하는 道와 謹終追遠하는 마음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며, 국가의 교화를 숭상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뜻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이다.」(「家禮」〈序〉, 凡禮有本有文自其施於家者言之則名分之守愛敬之實其本也 冠昏喪祭儀章度數者其文也其本者有家日用之常體固不可以一日而修其文又皆所以紀綱人道之始終雖其行之有時施之有

所然非講之素明習之素熟則其臨事之際亦無以合宜而應節是亦不可一日而不講且習焉者也 … 誠願得與同志之士熟講而勉行之庶幾古人所以修身齊家之道謹終追遠之心猶可以復見而於國家所以崇化導民之意亦或有小補)

이와 같은 저술동기를 지닌 주자가례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禮로서 작용했을 뿐 아니라 名分과 愛敬을 행함과 동시에 冠·昏·喪·祭의 의식절차를 익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천적인 가정의 의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가례」의 구성체제

朱子四禮라고도 칭하는 주자가례는 版本에 따라서 異同이 많으나 그 編次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황원구, 1981).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4卷本の 性理大全書(卷 18-21)에 의거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가례」의 구성체제를 살펴보겠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性理大全書에 의거해 볼 때 「가례」 권 1은 家禮圖說, 권 2는 家禮序·通禮·冠禮·昏禮 그리고 권 3과 권 4는 喪禮와 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각 의례를 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의 체제로 갖추어져 있어서 일상적인

<표 1> 「가례」의 구성체제

卷	內 容
卷 1 (性理大全書 卷 18)	家禮圖說
卷 2 (性理大全書 卷 19)	家禮序
	通禮(祠堂, 深衣制度, 司馬氏居家雜儀)
	冠禮(冠, 笄)
卷 3 (性理大全書 卷 20)	昏禮(議昏,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
	喪禮(初終, 沐, 浴, 襲, 奠, 爲位, 飯含, 靈座·魂帛·銘旌, 小斂, 大斂, 成服, 朝夕哭奠, 上食, 聞喪, 奔喪, 治幣, 遷柩, 朝祖, 奠, 膊, 陣器, 祖奠, 發引, 及墓, 下棺, 廟后土, 題木土, 成墳)
卷 4 (性理大全書 卷 21)	喪禮(虞祭, 卒哭, 祔, 小祥, 大祥, 禫, 居喪雜儀) 祭禮(四時祭, 初祖, 先祖, 祫, 忌日, 墓祭)

로 보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술되었다고 하겠다.

이중 본 연구에서 고찰할 昏禮의 내용은 議昏,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행분류(이길표 외, 1997)를 참조하여 議昏, 納采, 納幣를 先禮, 親迎을 本禮,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를 後禮로 재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주자가례의 도입 및 시행

주자가례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 그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말에 그것이 널리 보급된 것을 보면 주자학의 전래와 더불어 도입·수용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정몽주가

「상례의 복제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가례에 의하여 문물과 의장을 모두 다시 고쳐서 정하였다.」(『圃隱集』 卷 4. 制喪立廟 依家禮 文物儀章 皆其更定)

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주자학을 최초로 전래한 安珦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추리가 가능해진다.

안향은 고려 충선왕이 즉위한 1280년에 元나라에서 설치한 儒學提舉司의 提舉에 임명되어 왕을 따라 元나라에 다녀왔고 1280년에는 元京에 머물면서 「朱子書」를 직접 기록하고 가져와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여 博文約禮를 이루었다(회현실기간행위원회, 1984)고 한다.

주자학이 도입되기 이전까지의 고려사회는 儒風이 성행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표면적으로는 불교가 국민사상을 지배하였다. 이에 철학과 사상적으로 불교가 융성하였으나 일반 백성들의 불교신앙은 주술적인 기복불교로 타락하여 샤머니즘의 미신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하여 척불론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고려말에 1(儒인 안향과 정몽주는 그 당시 拜佛行事에만 지나치게 정신을 쏟고 유학의 진흥에는 소홀했던 사회상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척불론에 따라 주자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그 기풍이 진작되었으니 性理思想은 발전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권문귀족들은 세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민심은 극히 어지러웠다. 더구나 고려말 공민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친명·친원파로 갈라져서 양대 세력을 형성함에 따라 고려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정도전, 조준 등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여 이성계와 결탁함으로써 권문세족들에게 대항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려왕조를 타도하고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주체세력이 되었던 것이다(최원순 외 2인, 1982).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건설된 조선조는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주자의 성리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한 주자가례의 실천을 넓히기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국민사상을 하나로 결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즉 조선초기 주자가례는 질서의 확립, 불교 및 민간 신앙적인 전통적 생활관습의 변화, 典章文物의 확립, 그리고 사대부 계층내의 동질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비록 주자가례를 완전히 이해하고 시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규범으로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주자가례는 1차적으로 사대부에게 법적 강제력을 갖고 시행되었으며 일반 민에게는 왕실이나 사대부가 위에서 먼저 행하면 분발아서 행할 것이라는 교화의 간접적인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昏禮에 있어서는 喪中에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남자 나이 16에서 30까지, 여자 나이 14에서 20까지의 혼인 기한에 혼인하도록 하는 것이 주자가례에 의해서 지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親迎에 있어서는 태종 7년에 왕실에서 세자가 친영을 행하였고, 세종 16년부터는 왕의 지시에 따라 왕자·왕녀가 본격적으로 親迎을 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대부 계층에서는 親迎이 거의 행해지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率婚制(男歸女家)나 預婚制를 행하였다. 預婚制는 10세 정도의 남녀가 納采, 納幣만 하고 임시 혼인하는 것이었다.

사대부 계층이 어느 정도 주자가례를 체화한 성

종대 중반이후 성리학적 소양을 보다 강하게 지닌 신진사류들이 등장하여 활동함에 따라 교화는 이전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행해졌고 동시에 지배층의 윤리적인 도덕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연산군대에 일시 저지를 당하였으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었다.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였으며 교화의 강조와 경제력의 상승에 의해 사대부 뿐만 아니라 일반민까지도 행하였다. 이로써 주자가례 가운데 昏禮에 있어서는 사대부 계층이 비로서 親迎을 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종 10년에 이르러서는 일반민도 親迎을 행할 것이 청해지기도 하였다. 한편 성리학적 소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니면서 禮儀廉恥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여 중종 후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던 사림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더불어 주자가례에 대해서도 이해의 깊이를 더해갔다.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된 사림은 상업의 발달과 농민의 계층분화로 인해 향촌이 불안정하게 되자 향촌의 안정과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자가례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어 나름대로의 가례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의 가례서들은 冠昏喪祭禮의 내용을 전부 담지 못하고 서술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즉 조선초기에는 사대부계층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반하여 16C에는 신분적으로 토착화되어가고 향촌 사회에서 기반을 잡아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 각각의 가문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일이 당면 과제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가례서는 각 가문의 생활규범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후 17C에 들어서면서 성리학이 예학으로 발전하며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김인옥, 1997) 이때부터 冠昏喪祭禮를 모두 구비한 체계적인 가례서들이 저술되었고 주자가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여파로 「가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서적과 「가례」의 미흡한 것을 보충하고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저술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가정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

는 「사례편람」은 영조때 李紱가 朱子の 「가례」를 본으로 하고 고금의 예서 및 선현들의 예법·예설을 상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원칙에 의거한 「가례」에 비해 행용에 있어 시속의 예제와 관행이 참작되었다. 이러한 「사례편람」은 가례가 일반에 보편화 된 조선후기에 널리 보급되어(이재룡, 1995) 冠昏喪祭의 禮로서 그 내용에 준하여 일반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여졌다.

이상에서 「가례」의 배경적 특성으로 저술동기와 구성체제 그리고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자가례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것을 고찰해 본 바와 같이 「가례」는 비록 주자라는 중국 南宋 시대의 학자에 의해 저술된 것이지만 고려말 이래로 다방면에 걸쳐 우리의 사상, 제도, 그리고 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례」에 대한 고찰은 冠昏喪祭禮에 관한 문헌들의 역사적 모체를 밝혀내는 것임과 동시에 생활사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으며, 또한 「가례」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禮와 冠昏喪祭의 의식절차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에 내재된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천적, 규범적 성격의 冠昏喪祭禮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현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2. 주자 「가례」에 나타난 혼례의 내용

앞서 「가례」의 구성체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례는 「가례」의 권2에 속해 있으며 그 내용은 議昏,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례」에 저술되어 있는 혼례의 내용 중 先禮라고 볼 수 있는 의혼, 납채, 납폐의 과정을 고찰하여 그에 내재된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1) 議昏

의혼은 양가가 혼인에 대해 의논하는 것으로 주자는 「가례」〈혼례〉에서 먼저 혼인의 연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자의 나이 16에서 30까지, 여자의 나이 14에서 20까지로 한다. 사마온공이 말하되 옛날에 남자는 30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에 시집갔다 했으나 이제 법령으로 남자 나이 15, 여자 나이 13 이상이면 모두 혼인을 허락하였으니, 이 說은 고금의 道를 참조하고 예절과 법령의 중도를 잡작한 것이고,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에 합당한 바이다.」(「家禮」〈昏禮〉, 議昏, 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 司馬溫公曰古者男三十而娶女二十而嫁今令文男年十五女年十三以上並所昏嫁今爲此說所以參古今之道酌禮令之中順天地之理合人情之宜也)

라고 하였다. 사실상 주자에 의해 「가례」가 저술될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조혼의 풍속이 행해져 부리를 빚고 있었다(김도기, 1981). 이로 인해 사회제도적으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에 합당한 혼인의 연령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이와 관련지어 주자는 「소학」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부부는 인륜의 大綱이요, 天壽의 擘이다. 세속에 너무 이르게, 미처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녀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교화는 불명확해지고 수명이 단축된다.」(「小學」〈明倫篇〉, 夫婦人倫大綱 天壽之擘也 世俗嫁娶太早未知爲父母之道而有子是以教化不明而民多夭)

즉 부모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에는 혼인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경계하였다.

한편 혼인의 요건으로 기년이상의 喪中이 아니어야 함을 일러,

「혼인당사자와 주혼자는 기년이상의 喪이 없어야 성혼할 수 있다.」(「家禮」〈昏禮〉, 議昏, 身及主昏者無葬以上喪乃可成昏)

고 하였다. 즉 4촌이내 근친의 상복을 입는 기간에는 혼인을 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혼인은 중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부귀를 헤아리는 것은 경솔한 것이니 혼인당사자의 성행과 가법의 여하를 살피야 것을 당부하였다.

「만드시 중매를 시켜 왕래하여 말을 통하게 하고, 신부집의 허락을 기다린 뒤에 납채를 한다. 사마온공이 말하되, 무릇 혼인을 의논함에는 마땅히 먼저 신랑 신부의 성행과 가정의 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지 부귀를 흠모해서는 안된다. 신랑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지금은 비록 빈천하지만 어찌 장차 부귀롭게 될지를 알겠는가. 진실로 불초하면서도 지금은 비록 부자로 넉넉하나 어찌 장차 빈천하게 될지를 알겠는가. 한 집안의 흥망성쇠는 부인에게 달려 있다. 진실로 한때의 부귀만을 흠모해서 장가를 들면 그 처는 자기의 부귀에 힘입어 남편을 업신이 되고 시부모에게도 오만불손하여 교활하고 질투하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니 후일에 환난이 심할 것이다. 설사 신부집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거나 신부 집의 세도에 힘입어 귀인이 된다 하더라도 진실로 대장부의 기개를 가진 사람이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家禮」〈昏禮〉, 議昏, 必先使媒氏往來通昏俟女氏許之然後納采司馬溫公曰凡議昏姻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勿苟慕其富貴婿貧矣今雖貧賤安知異時不富貴乎苟爲不肖今雖富盛安知異時不賤乎 婦者家之所由盛衰也 苟慕其一時之富貴而娶之彼挾其富貴鮮有不輕其大而傲其舅姑養成驕妬之性異日爲患庸有極乎 借使因婦財以致富依婦勢以取貴苟有丈夫之志氣者能無嫌乎)

이상으로 보아 주자는 「가례」〈혼례〉의 의혼 부분에서 혼인을 의논할 시의 몇 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德本財末의 원칙을 취하여(이길표, 1983) 빈부와 귀천 모다는 혼인당사자들의 연령과 덕행 그리고 양가의 법도와 길흉사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다.

## 2) 納采

납채는 의혼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채택됨을 알리는 예이다. 그 내용을 「가례」〈혼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랑집에서

「주인은 사식을 갖춘다. 주인은 곧 주혼자이다. 붉은 서신을 사용하되 세속의 예와 같이 한다. 만약 집안 일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사식을 갖추어 종자에게 알리고 종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당에 만들어 아뢰나. “某的 아들(만약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某的某親의 아들)某가 나이 이미 장성했

으나 배필이 없더니 某官 某郡 (姓名)의 딸과 혼인하기로 이미 의논되어 오늘 납채를 행합니다. 감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 이에 자제를 사자로 삼아 신부집에 보낸다. 사자는 성복을 한다. (「家禮」〈昏禮〉, 納采, 主人具書 主人即主昏者書用牋紙如世俗之禮若族人之子則其父具書告于宗子夙興奉以告祠堂某之子某(若某之某親之子某)年已長成未有伉儷已議娶某官某郡姓名之女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 … 乃使子弟爲使者如女氏 使子盛服)

신랑집의 사자가 도착하면 이에 신부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납채의 예가 행해진다.

「신부집에서도 역시 종자가 주인이 된다. 주인은 성복을 하고 나와서 사자를 맞이한다. 종자의 딸이 아니면 그 아버지는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항렬이 높으면 약간 나아가고 낮으면 약간 물러선다. … 사자가 치사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 은혜롭게도某에게 딸을 주시니某的某親 某官이 선인의 예로 붓를 시켜 납채를 청했습니다.”라고 한다. 시종이 서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자는 이를 주인에게 전한다. 주인은 대답하되 “某的 자식이 우매하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였는데 당신께서 명하시니某는 감히 사양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북향재배한다. 사자는 자리를 피하여 답배하지 않고 물러나기를 청하여 명을 기다려 나온다. 드디어 (주인이) 서신을 받들어 사당에 고한다. 신랑집에서의 의식과 같다. … “某的 몇째 딸이 나이가 점점 들어 장성하여 이미 某官 某郡 (姓名)의 아들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오늘 납채를 행합니다. 감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 (그리고 나서) 주인이 나와 사자를 맞이하여 당에 올라 답신을 주고 사자는 그것을 받아 물러나기를 청한다. (「家禮」〈昏禮〉, 納采, 女氏亦宗子爲主人盛服出見使者非宗子之女則其父位於主人之右尊則少進卑則少退 … 使者起致辭曰吾子有患脫室某也某之某親某官有先人之禮使某請納采從言以書進使者以書授主人主人對曰某之子愚又弗能教吾子命之某不敢辭北向再拜使者避不答拜使者請退俟命出就遂奉書以告于祠堂如壻家之儀 … 某之第幾女年漸長成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 … 主人出延使子升堂授復書使者受之請退)

이러한 과정으로 납채가 끝나고 나면 신부집의 주인은 사자에게 손님의 예를 갖춘다. 즉 사자와 주인은 交拜와 揖을 하고 평상시의 주객의 자리에 나아가며, 시종도 별실에서 대접을 받고 모두에게 폐백

이 주어진다. 그 후에

「사자가 복명하면 신랑집 주인은 다시 사당에 고한다. (이때) 축문은 쓰지 않는다. (「家禮」〈昏禮〉, 納采, 使子復命壻氏主人復以告于祠堂不用祝)

이상에서 「가례」〈혼례〉에 나타난 납채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상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양가의 신중하고 예의바름(正)을 발견하게 된다. 즉 납채를 행함에 있어 사당에 고하여 조상이 계셨기에 오늘의 기쁜 일이 있게 됨을 감사하는 모습과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자제를 사자로 삼아 양가를 왕래하게 하는 것은 납채의 예를 신중하고도 바르게 행하고자 했음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 3) 納幣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폐백을 보내는 예이다. 이에 「가례」〈혼례〉를 통해 납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랑집에서의 납폐 준비에 대한 것으로,

「폐백은 색이 있는 비단을 사용하여 집안 형편에 따라 하되 두끝으로 하고 많아도 열을 넘지 않아야 한다 …」 (「家禮」〈昏禮〉, 納幣, 幣用色緡貧富隨宜 少不過兩多不踰十 …)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납폐를 행할 때 집안의 형편에 맞게 사치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납폐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약이 완전히 성립된데 대하여 감사하는 誠敬의 표시를 전달(이길표, 1983) 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납폐시에 비단은 둘을 사용하도록 언급하였는데 이를 「儀禮」의 〈士昏禮〉에서 찾아보면 음양의 결합을 뜻하는 玄纁(「儀禮」〈士昏禮〉, 以成昏禮用玄纁者象陰陽備也)으로 되어 있다. 즉 혼례를 陽往陰來(「禮記」〈昏議〉, 取陽往陰來之義)라고 하는 것 같이 부부의 和樂에 가치를 둔다면 玄纁의 양단을 쓰는 것은 天地의 正色이라 하여(이길표, 1980) 물건의 품질 보다는 玄纁에 담긴 의미를 더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부집에서 행해지는 납폐의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랑집에서) 서신을 갖추어 사자를 신부집에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서신을 받아 답신을 보내며 손님에게 예를 표하고, 사자는 복명하되 납채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에) 예는 납채 때와 같으나 다만 사당에 고하지는 않는다. 사자가 치사하되 납채 때와 같으며 채택의 采자를 폐백의 幣자로 고친다. 시종이 서신과 폐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자가 서신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대답하여 “당신께서 선인의 법을 따라 아무개에게 정중한 예를 주시니 아무개가 감히 사양할 수 없으며, 감히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서신을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폐백을 받은 후 재배한다. 사자는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나아가 명을 청한다. 주인은 답신을 주며, 나머지는 모두 납채 때의 의식과 같다.」(「家禮」〈昏禮〉, 納幣, 其書遺使如女氏女氏受書復書禮賓使者復命並同納采之儀禮如納采但不告廟使者致辭改采爲幣從者以書幣進使者以書授主人主人對曰吾子順先典親某重禮某不敢辭不承命乃授書執事者受幣主人再拜使者避之復進請命主人授以復書餘並同)

이상에서 납폐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주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폐백을 보낼 때에 사치보다는 誠과 敬의 예를 갖추어 줄 것을 훈계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한 폐백과 정중한 서신을 통해 공경의 예를 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I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자가례에 대한 생활사적 고찰을 통하여 「가례」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禮와 冠昏喪祭의 의식절차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그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실천적, 규범적 성격의 冠昏喪祭禮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현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가례」가 비록 주자라는 중국 남송시대의 학자에 의해 저술된 것이지만 사회를 바르게 禮俗化시키고자 국민계몽을 지향한 교육적인 저술동기를 지니고 있어서 고려말 이래로 다방면에 걸쳐 우리의 사상, 제도 그리고 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 인간이 갖추

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禮로서 작용했을 뿐아니라 名分과 愛敬을 행함과 동시에 冠昏喪祭의 의식절차를 익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천적인 가정의 의례로서 그 구실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주자「家禮」에 나타난 冠昏喪祭禮 중 昏禮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앞으로 계승해야 할 혼례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議昏, 納采, 納幣의 과정을 중심으로 몇가지 점에서 논의하여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례는 물질적인 富貴가 아닌 德行을 바탕으로 한 양가의 원만한 결합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는 「家禮」〈昏禮〉의 내용 중 議昏時에 부귀를 운운하지 말 것을 경계하여 빈부와 귀천 보다는 혼인 당사자들의 연령, 덕행 그리고 양가의 법도와 길흉사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議昏 과정을 통한 혼인의사의 완료가 급기야 생략되고 있는 것이 사실(황경애, 1994)이나 현대적 의미의 배우자 선정과정에서 되새겨 볼만한 가치있는 내용으로 사료된다.

둘째, 혼례의 정신적 의미에는 孝의 가정윤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昏禮〉의 내용 중 納采의 예를 행할 때 양가가 모두 공경의 마음으로 사당에 먼저 고하였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당에서 가정의 중대사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 「예기」에서는 그 일을 존중한 것이며, 그 일을 존중하여 중대사를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조를 높였기 때문이다(「禮記」〈交特生〉)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친영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혼인의 참뜻은 천지의 和수를 본받아 一姓이 好수하고 백년해로하며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손을 이어 孝를 실천하고 化育에 참여하는데 있다(「禮記」〈昏義〉)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혼례의 상징적 의미는 혼인관계를 혼인당사자들만의 단순한 관계로 오인하여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마저도 간단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잘못된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혼례는 내면적인 誠을 바탕으로 하여 외면적으로 敬과 愛를 나타내는 禮로서 행해져야 한다.



이는 「家禮」〈昏禮〉의 納采 내용에서 정성된 마음(誠)으로 서신을 준비하여 전하는데 있어 타인이 아닌 子弟가 사자의 역할을 맡아 신중하게 양가를 왕래하였고, 또한 손님으로 간 사자와 이를 맞이하는 주인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主客의 名分을 삼가하고, 상하의 위계질서를 정연하게 하여 人事로서 愛敬을 표하였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혼례시의 納采 과정을 현대적 의미의 약혼에 해당되는 것(신상욱, 1997)으로 본다면 오늘날 과소비를 불러 일으키는 자기과시적 약혼식 보다도 양가가 정성된 마음과 敬愛으로 상호존중에 가치를 두었던 納采의 본래 의미를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誠과 敬愛의 조화를 근본으로 혼례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納幣의 과정에서도 조명해볼 수 있는데 즉 혼례시 納幣를 행함에 있어서 사치함이 없이 집안의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하여 바른 德으로써 예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던 것에서 되새겨 볼 수 있다. 이에 오늘날 특히 무례한 행동이나 함값 시비마저 초래하는 함들이기라고 불리우는 納幣의 과정이 혼례비용상에서 하나의 부담(이윤근, 1997)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納幣의 진정한 의미 즉 納幣는 당시 혼인의 유일한 증거로서 서신인 혼서와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는 폐백(이길표, 1995)을 공경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관혼상제례에 관한 역사적 문헌들 중 하나인 주자 「가례」를 통해 혼례의 내용 中 의혼, 납채, 납폐의 과정을 고찰하여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계승해야 할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논의해본 결과 혼례는 공경하며 삼가 신중하고 바르게 행해져야 하는 실천적, 규범적 성격의 禮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가 주도하는 과소비·사치 풍조, 경쟁적 과시문화로 인한 허례허식, 전통도 국적도 없는 무의식적 서구화 추종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이주의 등에 젖어있는 오늘날의 그릇된 혼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에 지면상 「家禮」에서 혼

례의 내용 中 先禮인 의혼, 납채, 납폐만을 고찰하는데 그쳤으므로 후속적으로 本禮인 친영과 後禮로 볼 수 있는 婦見舅姑, 廟見 그리고 壻見婦之父母가 연구되어 보다 의미있는 혼례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가정학에서는 주자가례를 비롯한 각종 가례서에 대한 생활사적 연구가 활성화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찾아야 할 관혼상제례의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1) 가례.
- 2) 고영진, "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3) 김도기, "혼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4)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5) 김인옥,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6) 박경변, "주자가례의 실천적 도덕성이 한국에 미친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7) \_\_\_\_\_, 한국의 예속연구, 서울 : 서광학술자료사, 1994.
- 8) 손승영, "혼례문화의 상업화와 가부장적 특성", 한국가족학회 추계 학술자료, 가족과 혼인문화, 1996.
- 9) 신상욱, "전통혼례의 고찰",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 모색, 1997.
- 10) 예기.
- 11) 이길표,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12) \_\_\_\_\_, "우리나라 혼례에 나타난 색배합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제 13집, 1980.
- 13) \_\_\_\_\_, "혼수의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논문집 제 9집, 1995.

- 14) \_\_\_\_\_, 주영애,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 29집, 1989.
- 15) \_\_\_\_\_, 최배영, "조선후기 규범서에 나타난 여성의 혼인준비교육", 성신연구논문집 제 35집, 1997.
- 16) \_\_\_\_\_ 의 3인, 전통예절,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시민대학, 1997.
- 17) 이윤금,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 모색, 1997.
- 18)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서울: 예문서원, 1995.
- 19) 이지영, "전통사회 혼례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0) 장철수,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한국 문화의 전통성", 문화인류학 7, 1975.
- 21) 전례연구위원회, 우리의 생활예절, 서울: 성균관, 1996.
- 22) 조기홍 외 6인, 예론,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23) 표성은, "배례(절)에 관한 역사적인 고증과 현행절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4) 황 간, 주자행장, 강호석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75.
- 25) 황경애,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6) 황원구, "주자가례의 형성과정", 인문과학 45, 연세대학교, 1981.